

kiri Weekly

2011.12.5 제159호

이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보험분야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전략

포커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도입의 제반 영향과 시사점

금융보험 해설

자본시장제도 이해(5): Bail-In

국내금융 뉴스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하락, 자본적정성 관리 필요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해외금융 뉴스

- 북미 _ 미국 경제, 완만한 성장세 지속
 - _ 피치,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 유럽 _ 주요 중앙은행들, 달러 유동성 공급 공조 결정
 - _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합의
 - _ 무디스, 유럽 전체 신용등급 위험 경고
 - _ 유로본드 발행 합의 불발
- 일본 _ 일본 금융회사, 유럽 재정위기에 따라 유럽 국채 경쟁적 매각
- 중국 _ 11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하락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보험 분야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전략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요약

- 2012년 1월 이행 예정인 한·미 FTA 중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분야는 보험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정보의 처리, 감독의 투명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형 공제기관의 건전성 규제 적용도 명시되어 있음.
 - 이 중에서 정보의 처리와 농협 등 4대 공제에 대한 지급여력규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며,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는 FTA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국의 금융회사에게 경쟁을 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적용됨.
- 한·미 FTA가 시행되는 경우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회사의 영업 관행이나 감독 투명성을 개선하는 모티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국경 간 보험거래 등은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에 없는 보험서비스 제공의 경우 국내에서의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재보다도 시장진입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모형을 가진 회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민원결과에 대한 내용 등이 소비자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공시되고,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수렴 등 감독규제의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 국내 보험회사는 고객 중심의 사업모형으로 전환을 모색함과 동시에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하여 글로벌 보험회사로서의 기반 구축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한·미 FTA로 인한 비대면방식의 국경 간 보험거래와 대면방식의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소비자에게 법규의 적용범위, 분쟁처리절차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1. 검토배경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2006년부터 8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을 통해 2007년 4월 2일자로 타결되었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동 협정안을 각각 2011년 10월 13일,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함에 따라 준비과정을 거쳐 201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내 금융산업은 한·미 FTA로 대외 경쟁력 제고 및 금융감독 선진화와 더불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¹⁾
- 한·미 FTA 보험 분야의 내용은 제13장 금융서비스 부분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금융서비스 부분은 20개 조문, 4개 부속서, 2개 부속서한, 유보목록으로 구성됨.
 -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정 내용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본문의 경우 적용범위, 내국민 및 최혜국대우, 금융기관의 시장접근, 국경 간 무역거래, 신금융서비스, 일정 정보의 취급,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감독의 투명성, 자율규제기구, 분쟁해결 등이 규정되어 있음.²⁾
 - 동 부속서는 국경 간 무역거래(Annex 13-A Cross-Border Trade), 구체적 약속(Annex 13-B Specific Commitments), 금융서비스위원회(Annex 13-C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일반인에 대한 우체국보험의 보험공급(Annex 13-D Supply of Insurance by the Postal Services to the Public)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양국가의 부속서한(Confirmation Letter)³⁾이 첨부되어 있음.
- 이에 보고는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⁴⁾가 보험산업과 보험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함.
 - FTA 협정의 주요 내용이 해당 분야뿐만 아니라 경영 전체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동 영향을 분석하고, 협정내용의 이행시기와 경영 관련 시사점을 제시함.

1) 외교통상부(2007.6.4), 「한·미 FTA 최종 협상 결과」, (<http://www.mofat.go.kr/search/search.jsp?searchData=FTA>)

2) 한·미 FTA 협정문의 상세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참조함(<http://www.fta.go.kr>).

3) 부속서한에는 국경 간 거래(Cross-Border Trade), 신금융서비스(New Financial Services)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4) 협정문상의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원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중개 및 대리자와 같은 보험 중개”, “상당·계리·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음(제13조, 제20조 정의).

2. 보험분야의 주요 내용



■ 한·미 FTA의 보험분야 주요 내용은 적용제외 분야 이외의 부분에 대해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 대형 공제기관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자율규제기관 등임.

- 다만,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미 FTA가 적용되지 아니함(제13.1조 3).
- 그러나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간 경쟁을 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됨.
- 이에 따라 국내 퇴직연금, 미국의 민영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FTA의 적용대상이 됨.

■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 부분은 신금융서비스 허용, 국경 간 보험거래 허용, 자연인의 이동을 통한 보험서비스 공급허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신금융서비스의 경우 미국(한국)에는 있으나 한국(미국)에는 없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함(제13.6조).
 - 이는 국내에 있는 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또는 지점을 통해서만 제공이 가능한 반면 국경 간 보험거래를 통한 공급은 불가능함.
 - 또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도 국내 금융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감독당국이 건별로 심사하여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로 운영함.
- 또한, 대외무역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부대 보험서비스에 한정하여 국경 간 보험거래⁵⁾를 허용하는데(부속서 13.가), 이는 회사가 미국의 보험영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 국민이나 보험물건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임(제13.5조, 부속서 13-가 국경 간 거래).
 - 이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적하보험, 항공보험, 우주발사(화물운송, 책임) 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과 관련한 보험으로 비대면방식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5) 국경 간 보험거래의 대상종목은 수출입적하보험, 선박보험, 항공보험, 생명보험, 해외여행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계약이며, 국내 보험회사로부터 3회 이상 거절되거나 국내 보험상품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며, 보험가입방식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참고로 보험업감독규정 제1-6조는 외국보험회사는 비대면방식으로만 보험계약 체결(중개사의 재보험거래는 예외)과 광고(제1-7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보험중개업도 국경 간 보험거래로 한정된 종목에 대해서만 중개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미국(한국) 보험서비스업의 경우 국내에서 영업허가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미국) 보험소 비자를 대상으로 대면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보험 자문⁶⁾, 손해사정, 리스크평가⁷⁾, 보험계리 등 보험부수업에 해당됨.

■ 대형 공제기관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부분은 우체국 등 대형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경쟁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여 잠재적 부실을 축소하기로 함(부속서 13-라. 일반인에 대한 우체국보험의 보험공급, 부속서한).

- 우체국보험의 경우 협정발효 즉시 변액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퇴직보험 등의 새로운 상품을 출시 하지 못하며, 협정발효 후 2년 후에는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 결산서류, 보험상품 변경내용 등을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이에 따라야 함.
-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공제는 협정 발효 후 3년 뒤에 지급여력기준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함.

■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해외본점 및 금융정보처리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게 허용될 전망이다(부속서13-나 구체적 약속 제2절 정보의 이전).

- 다만, 감독당국이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탁받은 금융정보의 재사용금지, 국내 금융감독당국의 해외수탁기관에 대한 접근, 적정한 전산시설유지 등 감독체계를 정비한 뒤 개방하기로 함.

■ 보험감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임.

- 보험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인허가 기간을 120일(보험은 150일) 이내로 하며, 감독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의견수렴기간을 현행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하며, 감독기관이 행하는 행정지도 시에도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준수해야 함(부속서13-나 구체적 약속 제4절 투명성).

6) 보험자문이라 함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 전략, 또는 상품 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과 같은 활동을 말함(부속서 13.가).
7) 리스크평가라 함은 리스크 분석, 리스크 예방, 또는 난해하거나 이례적인 리스크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과 같은 활동을 말함(부속서 13.가).

- 보험회사 민원처리에 대해 공개를 할 때에는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발표해야 하며, 발표 시에는 민원지수 비율형태 및 등급형태로 제시하되 계산방법, 접수 민원건수, 유효민원 건수도 공개해야 함(부속서13.나 제5절 보험민원 처리방법 및 절차)
- 양국가의 자율규제기관은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게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의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함(제13.12조).
- 협정의 부속서한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개발원을 보험자율규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3. 보험산업 영향



- 우리나라에 진출한 미국 보험회사⁸⁾는 금융정보를 미국 본점 또는 금융정보처리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입장벽 요소⁹⁾ 중 일부가 완화되어 국내 진입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미국의 전문화되고 특화된 혁신적 보험상품을 가지고 판매채널과 손해사정, 정보처리 등을 아웃소싱¹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모형을 보다 단순하게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국경 간 보험거래는 주로 적하보험과 재보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보이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이들 보험의 경우 대부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업성보험에 해당하고, 이미 모든 국가의 보험회사에 대해 허용된 것이므로 한·미 FTA 때문에 더 증가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8) 2010년 4월 현재 생명보험 4개사(메트라이프, 뉴욕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손해보험 4개사(AHA, Ace, Federal, 퍼스트퀀원)가 있으며, 각각 해당 시장 수입보험료 중 8.0%(6,162억 원), 1.3%(587억 원)를 차지하고 있음.

9) 외국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지점형태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영업기금 30억 원과 인력, 전산설비 등 물적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사업 중에도 이들 요건이 유지되어야 함(보험업법제6조(허가의 요건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2-7(인력, 물적시설의 유지 등))

10)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허가의 세부요건)제2항에서는 아웃소싱 분야를 손해사정업무, 보험계약심사를 위한 조사업무,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 전산설비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외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적하보험의 경우 미국 관련 수출입 보험료가 291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이 중 미국 보험회사에 적하보험을 가입할 가능성은 수출적하보험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재보험의 경우에는 국내 보험회사들이 주로 로이드나 유럽 재보험회사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지만, 미국의 재보험조건에 대한 규제¹¹⁾로 국내 우량물건에 대한 재보험계약의 인수 경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임.
 - 특히, 보험중개업이 비대면방식으로 허용되어 있어 시너지가 발휘될 가능성이 있음.

〈표 1〉 미국 수출입금액과 적하보험료 추이

| 연도 | 국내의 미국 수출입액(억 달러) | | 국내 적하보험 보험료(억 원) | |
|------|-------------------|-----|------------------|-----|
| | 수출액 | 수입액 | 전체 | 미국 |
| 2004 | 428 | 288 | 2,257 | 338 |
| 2005 | 413 | 306 | 2,046 | 270 |
| 2006 | 432 | 337 | 2,012 | 244 |
| 2007 | 458 | 372 | 2,186 | 249 |
| 2008 | 464 | 384 | 2,689 | 266 |
| 2009 | 376 | 290 | 2,342 | 227 |
| 2010 | 498 | 404 | 2,875 | 291 |

주: 미국의 적하보험 보험료는 전체 수출입금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적하보험 보험료에 곱하여 추정한 것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e-Biz 지원본부 T 전략실; 보험개발원, 「2010 손해보험통계연보」.

■ **신보험상품 공급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보험서비스 제공 측면은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신보험상품 제공의 경우 미국 보험회사가 지점이나 법인 형태로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내 보험회사들이 전통적 상품에만 안주하는 경우 신상품수요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품과 서비스를 연계한 혁신적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함.
- 미국의 경쟁력 있는 리스크 평가 등 서비스전문기업이나 계리서비스업체가 우리나라의 영업허가 없이도 자연인의 이동을 통해 국내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체 간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보임.

11) 미국의 경우 재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미국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고 인수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함. 송윤아(2010.12.27), 「미국 재보험규제의 시사점」, 『KiRi Weekly』 제112호 주간이슈 참조.

-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사정과 계리업에 한정하여 보험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 리스크관리 및 자문 등 전문서비스에서는 경쟁 열위에 있음.

■ 한·미 FTA로 국내 판매채널은 국경 간 보험거래, 중개업 및 보험서비스 개방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미국 보험서비스 회사가 단체보험 또는 부유층이나 특정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국내 보험서비스회사보다 경쟁력 있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동 소비자들의 판매 채널 및 보험회사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손해보험의 중개업 개방에 대한 영향은 주로 국제교역과 관련된 보험에서 비대면으로만 중개해야 하므로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국제운송 중인 화물이나 우주발사체 보험 거대리스크 관련 부분에서 경쟁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4. 시사점 및 향후 대응전략



- 국내 보험시장은 한·미 FTA를 통해 보험상품 공급측면의 변화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업모형(business model)을 가진 보험회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기존 보험영업 관행을 개선하거나 소비자 중심 사업모형으로 전환 준비가 필요함.
- 금융정보위탁처리 및 우체국을 제외한 공제기관 지급여력 적용에 대해서만 협정 발효 2년 이내에 적용되고 나머지는 즉시 적용되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함.

〈표 2〉 한·미 FTA 보험분야 이행 시기 및 영향 요약

| 구분 | 세부 내용 | 이행 조건 | 이행 시기 | 산업영향 |
|--------------|-------------------------------------|-----------------|------------|------------|
| 보험진입 및 사업모형 | 금융정보의 자국 본사 또는 전문기관 처리 위탁 | 개인정보 등 보완조치마련 | 발효 후 2년 이내 | 진입 증가 |
| 보험상품 공급 | 무역 관련 보험상품 국경 간 거래 허용 | 대면방식 한정 | 발효 즉시 | 미미 |
| | 현지 법인 지점을 통한 신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 | 진출국의 상품별 심사, 허가 | 발효 즉시 | 미미 |
| 보험 관련 서비스 공급 | 보험자문, 리스크평가, 손해사정, 계리업무의 국경 간 거래 허용 | 대면방식 한정 | 발효 즉시 | 영향 있음 |
| 감독투명성 | 규정 개정 의견수렴기간 확대, 민원등급 공표, 행정지도 의견수렴 | - | 발효 즉시 | - |
| 공제기관 진전성감독 | 우체국보험 감독강화 | 관련법 개정 | 발효 후 2년 이내 | 공정경쟁 기반 마련 |
| |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 | 발효 후 3년 이내 | |

주: 우체국보험의 경우 신상품 개발 제한은 협정이 발효되면서 적용됨.

■ 국내 보험소비자가 국경 간 보험거래나 리스크평가 및 계리서비스를 받고 금융정보를 미국에서 처리하게 되는 경우 미국의 규제감독과 계약자 보호체계를 적용받게 되므로 관련 보험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양국가 간 협의기구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용이한 분쟁해결 절차 운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협정문」 제13.18조에서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서비스패널을 구성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구체적 내용은 없는 상태이고, “부속서나. 구체적 약속 제7절 감독협력”에 정보교환 등에 대한 법적 권한 부여 등이 언급되어 있음.

■ 국내 보험회사 및 보험서비스 기관들의 경우 미국보험시장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보험회사 중 미국에 진출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없으며, 손해보험회사는 법인형태 1개사, 지점형태 5개사가 영업 중에 있음.
- 그러나 국내 회사들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미국 보험회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임. **kiri**